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호	603
-----	-----

제출 년월일 : 1997. 4.

제출자: 안산시장

□ 제안이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정한 안산시보육조례가 일부조항에서 상위법령에 위배또는 중복 제정된 것으로 나타나 삭제하고 보조의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는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민간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지급 규정이 상위법에 위반또는 중복지원 하는 결과가 되므로 삭제함(안 제20조 제2항)
- 아동별 지원기준과 방과후 아동보육의 지원기준이 상위법령에 지원근거가 있어 별도 규정 불필요로 삭제함(안 제21조)
- 장애아, 영아전담, 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조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보조 보조사업대상을 인건비와 보육아동 급·간식비로 추가 삽입함.
(안 제22조)

□ 입법예고에 관한사항

- 기간 : '97. 3. 19 ~ 4. 7(20일간)
- 결과 : 의견없음

□ 참고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21조(비용의 부담), 동법 제22조(비용의 보조)
- 경기도 조례검토 의견 : 경기법무 11250 - 95('97. 1.21)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 보육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 2항을 삭제한다.

제21조 를 삭제한다.

제22조 중 "범위내에서" 다음에 "인건비 보육아동 급·간식비" 를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20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p> <p>① (생 략)</p> <p>② <u>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시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은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단, 장애아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u></p> <p>③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장은 교재교구비, 보육아동급식비, 시설운영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제20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삭 제)</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1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p> <p>① <u>시장은 전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방과후 아동 보육에 대한 지원도 제 1 항과 같다.</u></p>	<p>제21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삭 제)</p> <p>① (삭 제)</p> <p>② (삭 제)</p>
<p>제22조(장애인, 영아전담, 야간보육시설의 보조) 시장은 장애자, 영아전담, 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제22조(장애인, 영아전담, 야간보육시설의 보조)<u>범위에서</u> <u>인건비, 보육아동급·간식비를</u></p>

및 社會的 발달등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保育內容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19條(獎學指導 등) ①保健福祉部長官은 第18條에 의한 嬰幼兒保育의 充實을 기하기 위하여 奨學指導와 保育프로그램 및 教材·教具의 開發普及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教育部長官에게 協調를 要請할 수 있다.
②獎學指導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健康診斷) ①保育施設의 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育하고 있는 嬰幼兒에 대한 健康診斷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保育施設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健康診斷을 실시한 결과 治療를 요하는 嬰幼兒에 대하여는 그 保護者와 協議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4章 費用

第21條(費用의 부담) 嬰幼兒의 保育에 필요한 費用은 保護者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生活保護法에 의한 生活保護對象者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低所得層 子女의 保育에 필요한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第22條(費用의 補助)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育施設의 設置 및 운영등 嬰幼兒의 保育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을 補助할 수 있다.

第23條(事業主의 費用補助)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事業場에 保育施設을 設置한 事業主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施設運營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補助하여야 한다.

第24條(費用의 收納) 第7條에 의하여 保育施設을 設置한 者가 그 施設을

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국·공립보육시설,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매년 운영비
3. 보육정보센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4. 기타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5조(사업주의 비용보조)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이 영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실시와 교육훈련의 위탁(시설장양성 교육훈련의 실시 및 교육훈련의 위탁을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12·6)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및 제 3조 생략

부 칙(94·12·23)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 2조 및 제 3조 생략

경 기 도

441-701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1 / 전화 (033) 249-2871 / 전송 249 - 2139 / 담당 : 김봉수

문서번호 빙무 11250 - 95

시행일자: 1997. 1. 21 (년)

받 을 애산시작

참 조· 기획실장

선	시	장	수	지
접	일	자	시	시
수	간	간	간	간
처	리	파	공	공
담	당	자	립	립

1997. 1. 22 결우수정 1997. 1. 22
1997. 1. 22 결우수정 1997. 1. 22
1997. 1. 22 결우수정 1997. 1. 22
1997. 1. 22 결우수정 1997. 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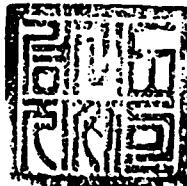
제 목 조례검토 의견회신

1. 11250 - 4 (97. 1. 4) 호의 안전이니

2. 안산시보육조례를 검토한 바,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일탈한 조례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55조 규정에 의거 조속한 기간내 본 조례개정을 친부와 같이 요구하오니 관련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자치법과 입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덧붙임 : 안산시보육조례 검토결과 1부. 끝.

경 기 도 지



□ 종합 검토의견

- 조례 제20조 제2항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서 규정한 범위를 일탈한 조례제정이며, 조례 21조·22조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내 관계규정에 의거 개정절차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점

- 조례 제20조 제2항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조치하는등 시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은 보육 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에 대하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서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 조례에서와 같이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은 수의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규정에 위배되며, 또한 정부고시표준보육단가에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산정되므로, 인건비를 보조할 경우 중복하여 보조하는 결과가 되므로 조례 제20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
- 조례 제21조에서 시장은 전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과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지원기준을 규정한 것에 대하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 및 기타 저소득 가정 자녀아동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전액 또는 반액을 기 지원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 조례 제22조의 장애자, 영아전담, 야간보육 시설에 보조하는 것에 대하여,

- 보조대상사업의 구체적 보조범위 (예: 인건비, 교재비 등)의 규정이 필요함.

안산시보육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603
번 호	

제출년월일 : 1997. 5. 2.

제출자 : 보사·환경위원회
황호명 의원 외 10인

1. 수정이유

-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를 증진시키고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운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조항을 신설하고 충전의 보조금 지원 조항 중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운영지원 범위를 명료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수정함.

2. 수정주요골자

- 제20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중 제2항을 충전과 같이 신설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 제21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를 충전과 같이 신설하고 제22조(장애자, 영아전담, 야간보육시설의 보조) 중 "장애자"를 "장애아"로, "인건비, 보육아동급, 간식비"를 "운영비"로 수정함.

안산시보육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보육조례증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0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정부가 고시한 국고보조시설의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 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조치하는등 시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은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단 장애아 보육 시설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전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지원도 제1항과 같다.

제22조 중 "장애인"을 "장애인"로, "인건비, 보육아동급, 간식비"를 "운영비"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천 안	수 정 안
<p>제20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p> <p>①(생략)</p> <p><u><신 설></u></p>	<p>제20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p> <p>①(천안과 같음)</p> <p>②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정부가 고시한 국고 보조시설의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조치하는 등 시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에 시장은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단 장애아 시설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p>
<p>③(생략)</p> <p><u><신 설></u></p>	<p>③(천안과 같음)</p> <p>제21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p> <p>①시장은 전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 기준을 정하고 이에따라 지원할 수 있다.</p> <p>②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지원도 제1항과 같다.</p>
<p>제22조(장애인자, 영아전담, 야간보육시설의 보조)</p> <p>시장은 장애자, 영아전담, 야간보육시설 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건비, 보육아동급, 간식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22조(장애인자,)</p> <p>.....</p> <p>..... 장애아,</p> <p>.....</p> <p>운영비를</p> <p>.....</p>